2000년 공정거래정책방향

글 • 박상조 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

21세기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의 기본방향

▣ 올해는 지식정보혁명이 본격화되는 21세기의 첫해

○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원천

○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경쟁이 더욱 격화

○ 기업의 성패를 소비자가 결정짓는 소비자중심사회가 전개

▣ 이러한 지식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

○ 자율과 경쟁속에 창의가 발휘되는 시장경제를 확고히 정착시킬 필요

※ 미국의 신경제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경쟁촉진으로 가능하였음

(2000. 2, 미국 대통령의 의회보고서)

▣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에 시장원리가 살아 숨쉬도록 경제 각 부문에 경쟁정책을 적극 추진

○ 선진화된 경영관행의 정착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

○ 디지털경제를 이끌어 갈 벤처기업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

○ 소비자가 기업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주력

○ 독점과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각 분야의 효율 극대화

2000년도 공정거래정책방향

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

그동안의 성과

□ 「5+3」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

○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상호채무보증 금지에 따라 대기업의 금융자원 독점 현상이 완화

○ 부당내부거래 억제, 감량경영, 금리하락 등에 따라 대규모 이익이 실현되고 R&D 투자여력이 증대

※ 30대그룹 당기순이익 : (98년)19.0조원 적자 → (99년)9.4조원 흑자

○ 부실대기업 퇴출로 대마불사(大馬不死)의 신화가 퇴조하고 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토대가 마련

□ 그러나 시장원리에 맞는 기업경영관행의 정착은 아직 미흡

○ 총수에 의한 경영전횡과 선단식경영(船團式經營) 관행이 지속

-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는 실제 투입한 자금에 비해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

○ 제2금융권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가 심화되고 있어 금융시장의 감시역할에 한계

⇒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금융시장의 경쟁촉진이 핵심과제

가.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

▣ 98. 2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

(98년 : 17.7조원 → 99년 : 29.9조원)

○ 적은 지분으로 다수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명목상으로만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부작용 발생

○ 이에 따라 99년 12월 30대그룹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%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(2001. 4. 1. 시행)

▣ 동제도가 무분별한 순환출자를 억제하되 구조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인정기준 마련(2000. 4. 1. 시행령개정)

○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

○ 임직원이 설립한 분사기업에 대한 출자

○ 외국인이 30%이상 최다출자한 외자유치법인에 대한 출자 등

▣ 금년 상반기중 30대그룹의 출자동향을 점검하여 출자한도초과액(99년말 기준 20.4조원)이 무리없이 해소되도록 유도

▣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중히 시정조치

○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한도초과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

○ 처분대상 주식은 명령일로부터 결정권 행사를 금지

나. 상호채무보증의 해소

■ 98. 4월부터 30대 그룹의 신규채무보증을 전면금지하고 기존보증도 2000. 3월말까지 완전해소하도록 의무화

■ 그동안 기업의 조기해소노력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보증요구관행을 개선한 결과

○ 97년말 33.6조원의 채무보증액중 해소시한이 2000. 3월말인 채무보증은 완전해소

〈30대 그룹의 채무보증 해소추이〉 (단위 : 조원)

	97. 12	98. 12	99. 12	2000. 3월말
1~5대	11.8	3.5	0.9	0
6~30대	21.8	8.8	3.4	0*
합 계	33.6	12.3	4.3	0

* 해소시한이 2001. 3월말인 채무보증(1.6조원) 제외

■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됨에 따라

○ 차입에 의한 방만한 확장경영과 선단식경영이 억제되고

○ 일부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확산되는 연결고리가 차단되어 연쇄도산의 위험이 감소

■ 앞으로 기업집단간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인 신규채무보증도 철저히 방지하여 대기업의 금융자원 독점을 차단

다. 부당내부거래의 근절

■ 98. 5월부터 6차에 걸쳐 대규모 조사 실시

○ 30대 그룹 및 친족분리회사와 공기업에 대하여 총 21.8조원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고 1,9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

	30대그룹	친족분리회사	공 기 업	합 계
지원성거래(조원)	20.3	1.1	0.4	21.8
과 징 금(억원)	1,845	75	37	1,957

○ 대규모내부거래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의무화(2000. 4), 공기업과 자회사간의 수의계약

제한 등 제도개선도 병행

■ 앞으로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 지속

○ 30대 그룹 중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큰 기업집단을 집중조사

○ 대기업에서 분사화된 기업(98년 이후 551개사)에 대하여는 위장계열사 여부, 모기업의 부당지원 여부 등을 조사

○ 한전, 한국통신 등 내부거래 가능성이 큰 공기업에 대해 조사

■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

○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선단식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계열사의 인력파견 등을 부당지원행위로 보아 시정조치

○ 계열사에 대한 저리대출, 계열사간 자금지원의 매개역할 수행 등 계열금융사의 부당내부거래 근절

디지털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

기본방향

◇ 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, 대기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양축을 담당하도록 적극 지원

◇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, 소비자불안을 해소하여 전자상거래 발전기반을 확충

가. 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원

■ 기업구조조정 결과 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인력과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여 디지털 경제의 기반 마련

■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제도를 운영

○ 벤처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30% 미만 출자는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

○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연구개발·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탄력적으로 적용

나.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

■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기존의 통신체계에 대변혁 초래

○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로 중간유통조직이 대폭 감소되고 유통·재고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한편

○ 기존 유통업체와의 갈등이 표출

▣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

○ 기존 통신업자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시정

○ 기존산업에 적용되던 규제들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

- 사무실면적기준 등 사이버공간에서는 불필요한 진입요건을 폐지
-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핵심인 택배 등 물류산업의 규제를 개선

○ 디지털시대에 필수적인 통신설비 등 정보인프라에 접근을 방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

▣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불안이 장애요인이므로 소비자 기만행위를 엄격히 시정하여 신뢰기반을 확보

○ 99. 12월 제정된 OECD가이드라인 내용과 소비자의견을 반영하여 「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」을 제정·시행(2000. 1월)

※ 운송비 부담주체, 반품·환불 조건 등 거래정보의 명시를 의무화

○ 통신판매 등을 규율하는 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」을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보완·발전

※ 개인정보보호, 상품수령후 10일 이내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인정 등

○ 소비자피해 감시를 위해 「전자상거래 감시망」구축·운영

※ 사이버소비자단체(20개), 소비자정보제공사이트(22개), Anti 사이트(10개) 등과 함께 사이버 감시망 구축

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

기본방향

◇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기업간 공정경쟁의 압력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 조성

◇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추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

가.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피해방지 강화

▣ 정보통신혁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자중심시대가

전개

○ 소비자가 "보호받아야 할 대상"에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"시장질서의 주도자"로 변화

○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·기업·정부의 역할 재정립

- 기업은 정확한 상품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,
-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,
-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

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전제가 되는 정보제공을 확대

○ 소비자정보가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도록 「소비자종합 홈페이지(www.consumer.go.kr)」를 구축(2000. 3)

-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한번의 클릭으로 검색 가능

※ 예시: 「소비자종합홈페이지」 메뉴중 "부동산" → 하위메뉴 : 아파트표준약관(공정위),
주택청약제도(건교부),
부동산기준시가(국세청) 등

○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를 표시·광고에 포함토록 하는 중요정보공개제도를 시행(2000. 4. 1)

- 학습교재판매업 등 10개업종이 공개해야 할 사항을 기 고시
- 앞으로 대상업종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(예: 예식장업 등)

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약관을 적극 개선

○ 복잡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400여종의 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

○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불만이 많은 분야부터 표준약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(은행여신거래약관 등 23개 기 보급)

나. 소비자중심시대에 적합한 행정체계 구축방안 강구

■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연계추진할 때 시너지효과가 극대화

○ 경쟁정책은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통해 양질의 제품이 저렴하게 공급되게 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증대

○ 공정위가 운용하는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경쟁압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제공

※ 미국, 영국, 프랑스,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경쟁당국이 소비자정책을 담당

■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감시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중심으로 체계화하는 방안 강구

○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시정기능과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기능의 연계강화 등

독과점구조와 담합관행의 개선

기본방향

◇ 국제적인 대형합병추세 등을 감안하되,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

◇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근절하여 경쟁질서 정착

가. 기업결합에 의한 독과점 형성의 방지

■ 최근 국내외에서 기업결합이 크게 증가

○ 외국에서는 세계화·정보화에 따른 무한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형합병과 전략적 제휴가 확산

※ 세계자동차시장은 합병(Daimler-Chrysler)과 전략적제휴(GM-FIAT)에 따라 6~7대 메이커 위주로 재편 예상

※ 인터넷·통신·방송의 통합을 위한 합병이 활발(AOL-Time Warner합병, Vodafone-Mannesmann합병 등)

- 각국의 경쟁당국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M&A필요성은 인정하되, 독과점 우려가 있는 M&A는 엄격히 조치

○ 국내에서도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기업결합이 크게 증가

- 98년에는 규모의 경제를 위한 수평결합이 증가한 반면,
99년에는 외자유치과정에서 외국기업에 의한 혼합결합이 증가

※ 기업결합 증가추세 : (97년)418건 → (99년)557건

※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: (97년)19건(8억달러) → (99년)168건(87억달러)

■ 앞으로 시장의 세계화추세 등을 감안하되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

○ 독과점을 초래하는 부실기업 매각은 사후에 번복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입찰전에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방안 추진

○ 해외경쟁 도입이 용이하여 경쟁제한의 폐해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폭넓게 허용

▣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여 심사하는 방안 강구

나. 담합관행의 근절

▣ 담합은 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시장경제질서 정착에 걸림돌이 되므로 이를 철저히 근절

○ 철강·가전 등 독과점시장의 가격담합 : 과징금 429억원

○ 28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: 105억원

▣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단호한 조치결과, 공용공사 낙찰율이 97년 87%에서 99년 74%로 저하되고(연간 4조원 예산절감효과), 건설업체들은 자정결의대회까지 개최

○ 업계의 자정노력을 감안하여 99년말 이전의 담합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 은전(恩典)조치 단행(99. 12월)

▣ 앞으로 대통령 은전조치이후의 건설 입찰담합은 엄중 조치

○ 아울러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고 물가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공산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담합도 철저히 시정

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주요개정내용

개정배경 및 추진경과

▣ '99년 8·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3대 과제의 하나로 "계열사간 순환출자 축소 및 부당내부거래방지"가 제시됨

▣ 그리고 '99. 8. 25 대통령 주재 「재계-정부-금융기관 간담회」에서 동과제의 실천방안이 합의됨에 따라 법개정안을 마련

※ 「재계-정부-금융기관 간담회」 합의 내용

- 금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2001. 4월로 함
- 1~10대 그룹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제도화하고, 공시제도 도입

▣ 주요 추진경과

〈법률〉

○ '99. 12. 28 : 개정법률 공포(법률 제6,043호)

○ 2000. 4. 1 : 시행

〈시행령〉

○ 2000. 3. 28 : 국무회의 의결
○ 4. 1 : 공포 및 시행

주요 개정내용

가.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과 예외인정사유의 구체화

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1. 4. 1부터 시행하되,

○ 시행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와 시행 이후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회사로서 편입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회사에 대하여는 1년간 해소시한(2002. 3. 31)을 부여

■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

〈적용제외〉

○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출자하는 경우
○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

〈일반적인 예외 인정〉

○ 기존 지분비율(持分比率)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
-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(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이내)
-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(代物辨濟)의 수령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(6월이내)

○ 당기순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
- 출자기업의 출자총액은 변동이 없으나,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여 법위반이 발생하는 사례 방지

○ 사회간접자본시설(SOC)에 대한 민간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(20년 이내)
- 적극적 민자유치가 필요하나, SOC투자의 성격상 투자비 소요가 막대하고 투자비 회임기간이 길며, 일정기간 경과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 등을 감안

〈기업구조조정, 외국인 투자유치,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예외인정(5년 또는 2년간)〉

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

○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·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
○ 동업종회사를 인수하여 2년이내에 합병이 예정된 경우의 출자
○ 계열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
○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분할법인에 대한 출자

※ 물적분할 : 회사가 그 재산의 일부를 포괄승계방식으로 신설되는 회사(분할신설법인)에 양도

하고 그 대가로 분할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100%를 취득하는 형태
(상법 제530조의 12)

○ 임직원이 설립하는 분사회사에 대한 지분율 30% 미만의 출자

○ 친족독립경영에 의한 계열분리 추진과정에서 분리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

- 다만 생산·판매·연구개발 등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계열사의 주식 취득에 한정

○ 재무구조가 부실한 계열사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매각에 앞서 당해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

②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경우

○ 특정 외국인측이 지분 30%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

③ 중소·벤처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경우

○ 원료·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30% 미만의 출자

■ 법위반에 대해 과징금·벌칙 등 제재조치 규정

○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10%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

○ 출자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

○ 벌칙 규정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

나.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

■ 대 상

○ 자산총액의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(상장·비상장회사 불문)가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토록 함

■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

○ 10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·유가증권·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%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을 거래하는 행위

※ 「동일 거래상대방과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」를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 판단

〈대규모내부거래의 유형〉

○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(회계처리상 계정과목 불문)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,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
○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,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
○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(자산은 유동자산, 고정자산, 채무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)

▣ 공시방법 등

○ 공시업무는 공정위가 증권거래법 제186조(상장법인의 신고·공시업무 등)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시방법 등은 공정위가 공시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

○ 신고수리기관 : 금융감독위원회

○ 공시시기 및 절차 : 이사회 의결후 1일 이내에 공시

○ 공시방법 : 금감위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

○ 공시내용 : 거래의 목적, 대상, 상대방, 금액 및 조건,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 잔액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함

- 공시내용 중복 :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신고·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신고·공시하면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. 다만,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함

▣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

○ 금융 또는 보험회사(계열금융회사)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(정의)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시는 해야 함

○ 공시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, 거래상대방, 거래금액,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

○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음

▣ 벌 칙

○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(회사 : 1억원 이하, 관련자 : 1천만원 이하)

다.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조정

필요성

▣ 현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(매출액의 2%)가 낮아 부당지원 내용 및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

▣ 이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

조정내용

▣ 매출액의 2% 범위안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5%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※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거래거절 · 끼워팔기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는 현행(매출액의 2%)유지

라. 채무보증금지 관련

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채무보증금지 예외인정

▣ 사회간접자본설비(SOC)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

○ 민간투자사업법인이 국내금융기관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당해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출자자가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채무보증금지대상에서 제외

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

▣ 채무보증제한 관련 예상되는 탈법행위를 엄중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아래의 사항을 규정

○ 자기 계열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당해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(중첩적 채무인수)

○ 비계열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하게 하고, 대신 자기는 당해 비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(교차보증)

마. 대규모기업집단(30대 기업집단) 제외

▣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이후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최근 지정된 30위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70% 이하로 대폭 감소한 경우에는

○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해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토록 함